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0111/Th	세부내용					
일시/장소	시 간	주 제	발표자			
	14:00~14:30	등록 및	등록 및 개회식			
		좌장 : 이 달 휴 교수(경특	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30~15:0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과 제재규정	권 혁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00~15:30	서비스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쟁점	이 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4(수),	15:30~15:50	Coffee	Break			
14:00~18:00 /El	15:50~17:10	종합토론	조기홍 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상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남철 교수 (연세대학교)			
	17:10~17:40	청중 질의 및 응답				
	17:40~18:00	폐회				

산안강조주간 발제문

권 혁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상 책무 강화 방안 - 산안법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산안법 개정의 주요 방향성



- 도급에 관한 산안법상 규제 강화
- 사업주 처벌 등 제재의 실질적 강화
- 프랜차이즈 등 적용범위의 확대

산안법의 노동법상 구조와 체계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3단계 구조

<산업재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의 보상>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복귀>: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직업훈련) 등등

- →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 → 문제는 우리 나라 산안법은 '예방 중심 체계'가 아니라, '사후적인 제재' 중심임.

산안법의 체계적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제정>: 1982년 7월 1일

<개정> : 부분 개정 포함 총 40회

- 사안대용방식: 타워크레인 관련 산안법 개정 등 → 산안법 체계 복잡성 초래
- **→ 범용성? 보편성? 체계성?**
- 이 기술중심 규율 방식: 개념의 모호성이 방치된 측면이 있음.

산업재해의 감소추이와 원인





산업재해의 실효적 예방조치란?

- 1. 추세: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추이만 보면 2004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
- →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만인율이 높음.
- 2. 과제: 문제는 낮아지고 있지 않은 5%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
- 3. 해법: ?
- → 산업재해의 경제손실은 ...= 18조 + 기업 손실 (작업중지+공공입찰제한) + 개인 손해 → 산업재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임. 대응역시 노+사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사실임.

도급관계와 산업재해예방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 1. 사건의 빈발
- = 지하철 역 수리 사건 / 에어컨 기사 사건 / 삼성 중공업 타워크레인사건 / 부산 엘시티추락 사건 → 모두 하청 근로자!
- 2. 정부의 대응 방향성
- (1)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 (2) 도급 사업주에 대한 의무 부담 강화
- (3)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산안법 보호대상의 확대: "일하는 사람"

<개정 이유>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u>일하는 사람</u>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중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u>일하는 사람</u>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중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일하는 사람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애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것

제6조(일<u>하는 사람의 의무) 일하는 사람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u>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애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산안법 상 의무 부담 주체의 확대: 특고/배달

- * 특고종사자 사용 사업주와 배당 업무 종사자 중개사업주에 대한 산안법 상의 무 부과
- <범인>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아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아여 업무상의 재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애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중에 중사하는 자(이아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중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중사의 산업재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필요한의 조치를 하여야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영태근로중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u>사업주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안전보건교욕을 실시</u>아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특수영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중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단말기 등으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u>중개이는 사업주는</u> 그 중개를 통해 「자중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이應자중차(이어..."이應</u> 자동차<u>"라 만다)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매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게 따라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u> 만다





산안법 상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

- * 실질적인 경영 결정 주체로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법안>

제13조(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 <u>업무집행지시자(이하 '대표이사 등</u>'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u>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인을 얻어야 한다</u>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산안법 상 사업주의 작업 중지/근로자 긴급대피

* <개정 취지>

→산업재애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 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제 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 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아여야 한다.

- 제52조(근로자의 긴급대피) ① 근로자는 산업재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 당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
-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안전 · 보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아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 로자에 대하여 애교,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상 중대재해 시 조치

- * <개정 취지>
-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권의 행사 및 해제 요건 명확화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u>사업주는 중대재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애당 작업을 중지</u>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애가 발생한 때에 다음 <u>각 호의 어느 아나에 해당아는 경우로서</u> <u>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u> 경우에는 고용노동부转으로 정아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애가 발생한 애당 작업 2. 같은 사업장 내의 중대제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그 밖에 중대재애 발생 원인과 연계되어 산업재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아거나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애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애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형으로 정아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애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애당 사업장의 산업재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





산안법 상 도급작업 제한 조치

* <개정 취지>

→도금작업, 수온,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mark>궁ㆍ가열</mark>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

<법안: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근로자에게 유애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애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애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3. 제1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산안법 상 도급작업 제한 조치

* 그개정 취기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 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변연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u>안전과 보건에 유매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u>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u>같은 사업장 내에서</u> 도급할 수 없다.

3 4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아도급 금지)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u>쇼인을 받아</u> 도급받은 수급인은 <u>도급받은 애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u>.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





산안법 상 도급작업 제한 조치

* <개정 취지>

→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감안하여 체결할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함.

<법안>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고 <u>산업재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u> <u>사업주에게</u> 도급하여야 한다.





산안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확대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 는 경우로 함.

<법안>

제2절 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

제62조(안전보건충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수급인(아수급인을 포함한다. 이아 같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아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충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에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충괄관리하도록 하여 이는 하다 제 그 사업하기 현대기라시 야 한다.... 1. <u>도급인의 사업장</u> 2. <u>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u>

제63조(<u>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u>)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u>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u>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애를 예방하기 위아여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애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자 순회점점

- 2. 역급성 논보임업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아는 안전보건교욕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와재ㆍ폭발, 지진 등에 대비안 경보제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휴게성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평으로 정아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명에 따른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u>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u> 점검을 아여야 한다.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





산안법 상 도급인의 정보제공의무

* <개정 취지>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애성ㆍ위함성이 있는 화막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애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법안

제2절 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

제65조(도급인의 정보제공)

- ① 도급인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아나에 애당아는 작업을 도급</u>아는 경우에 그 작업을 수행아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애를 예방아기 위아여 고용노 둥부령으로 정아는 바에 따라 애당 <<u>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u>아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여야 한다.
- 1. 폭발성ㆍ발와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애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아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아는 반용기ㆍ중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아는 설비를 개조ㆍ분애ㆍ애체 또는 칠거아 는 작업
- 고. 제 l 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② 제1 항에 따른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 항에 따른 도급인이 애당 정보를 애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u>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u> 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 책임을 면만다.





산안법 상 건설업 특례: 발주자 의무 신설

* <개정 취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법안>

제75조(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 ① <u>발주자는</u>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u>계획,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u> 를 모두 아여야 한다.
- Ⅰ<u>. 건설공사 계획단계:</u> 애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애야할 유애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2. 설<u>계단계:</u>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서(이하 "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3. <u>건설공사 단계:</u>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도록 하고 그 이앵여부를 확인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





산안법 상 프랜차이즈 사업주 규제

- * <개정 취지>
-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앵, 가맹본부가 궁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 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암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가랭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u>가맹본부는</u>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애 예방을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1.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ㆍ시행
- 2.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설치하거나 균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정보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상 법정형 하한제 도입

- * <개정 취지>
-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법안>

제172조(벌착)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아여 근로자를 <u>사망에 이르게 한</u> 자는 <u>1년 이성</u> 7년 이이의 정역 또

제173조(벌착)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다시 하도급 하도록 지시 또는 북 인한 <u>권합국사의 도급인의</u>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u>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에는 <u>3년 이상</u> 7년 이하의 정역 또는 <u>3억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산안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





산안법 상 사업주 수강명령제도 신설 등

- * <개정 취지>
- →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황함 → (2)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제18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① 법원은 제37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63조를 위반아여 <u>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u>에 대아여 유죄의 판결(선고유에는 제외 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u>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에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u> 병과<u>아여야 한다</u>.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야지 아니야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아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寶淨)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u>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u>마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u>교정시설의 장이 집행만다.</u>
- ⑤ 제1항에 따른 수창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안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 * <개정 취지>
-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166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정금 부과)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10억원 이하의 과정금을 부과ㆍ정수할 수 있다.</u> 다만, 수급인 근로자 의 산업재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M58조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M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 금액, 기간, 윗수 등 2. 제37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3. 산업재에 발생 여부

- <법이론적 평가>
- → 과징금제도의 기능적 의의?



감사**합니다.**

산안강조주간 발제문 13

프랜차이즈 산안법 쟁점과 과제

이 승 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비스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상의 쟁점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2018.07.04(수)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목차

- I. 배경
- Ⅱ. 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 Ⅲ. 프랜차이즈 관련 외국의 사례
- Ⅳ.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산안법상 쟁점 검토
- V.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세부 목차

- 1. 배경
 - 1. 노동법상 책임의 주체와 한계
 - 2. 산업안전보전 책임의 변화
 - 3. 프랜차이즈 사업의 종사자 책임
 - 4.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쟁점 과 과제
- Ⅱ. 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 1. 프랜차이즈 계약
 - 2.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 근로자의 관계
 - 3. 무점포 프랜차이즈

- Ⅲ. 프랜차이즈 관련 외국의 사례
 - 1. 미국
 - 2. 프랑스
- IV.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 1. 근로자의 개념문제
 - 2.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산안법상 생점
- V.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 1. 법률주의적 접근방식의 한계
 - 2.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산업안전 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 필요

1.배경

1. 노동법상 책임의 주체와 한계

- (1) 향후 산업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무공급(업무) 형태 출현
-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법 본연의 임무
- (전통적) 노동법=산안법=근로자 개념 동일
- 다양한 취업/고용형태 = 하도급관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플랫폼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의 안전보건 사고에 대응 한계

1.배경

1. 노동법상 책임의 주체와 한계

- (2) 노동법의 핵심개념인 종속성 중심 : 고용(employment)이 아닌, '일(work) · 직무(job)' 개념에 기초해 재구성
- (i)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확대 개정
- (ii) 준근로자(유사근로자) 개념 도입 입법론적 해결 방안
- (iii) 노사관계 당사자와 경제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판단
-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는 준근로자의 실태와 노동시장의 현실 여건, 사용자의 수규 능력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 노동법/사회보장법은 개별 근로자가 직 업인으로서 연속성을 보장, 적극적 직업생활에서 유연성 활용의 노동시장 구 조를 정립 필요

1.배경

2. 산업안전보건 책임의 변화

- (1) 산업현장: 산업안전권의 확보
 - 〈넓은 의미〉 종사자가 노무제공 과정상 재해 예방과 관련한 모든 조치
 -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작업도구의 제공+종사자의 교육+ 건강권의 확보
 - + 산재 발생 유발요인/위험인자, 예방책, 사용자의 법적의무/책임소재 규명
- (2) 프랜차이즈 사업 : 종사자의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
- (3) 신산업유형-사전예방의 책임 소재 명확화, 예방, 사후 구제 용이성 확보

Ⅰ.배경

3. 프랜차이즈 사업의 종사자 책임

- (1) 산안법= 사업의 지배를 통해 이익자가 그 과정상 위험 책임 배분
- (2)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법 체계
 - (i) 안전배려의무(사법적 근로계약 책임)
 - (ii) 근로계약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보험법상 보호 필요 책임
 - (iii) '위험' 작업의 사업을 지배하는 사업주 대상 산안법상 책임 재분배
 - 프랜차이즈/플랫 폼을 이용한 서비스산업의 노동방식

Ⅰ.배경

4.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쟁점과 과제

- (1) 산안법 제2조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
- (2)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근로자)인지*
- (3)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의무 부과(제5조 등)
- (4) 의무 위반시 법적 책임-확대 방안(이행-구체적 지침/매뉴얼 등)
 - * '사업주'의 정의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발주자)
 - * 현행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Ⅱ.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1 . 프랜차이즈 계약

- (1)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간 체결된 계약에 기반을 둔 사업자간 거래관계=민법(상법)의 원칙 적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사업관계
 - 목적: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Ⅱ.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1. 프랜차이즈 계약

- (2)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 판매) 경영/영업활동 등의 지원·교육, 통제
- (3) 가맹점사업자 :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제2조 1호).
 - *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가맹사업법 제2조 3호).
 - *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가맹사업 진흥법 제2조 3호).

Ⅱ.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2.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근로자의 관계

- (1) 가맹점주-가맹점근로자 관계
 -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노동법의 규율)
- (2) 가맹본부-가맹점근로자 관계:
 - = 직접적/명시적 근로계약관계 無=직접 법적 관계 규율 ×
 - = 가맹본부가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직접사용자로 인정 ×

〈이유〉

- (i)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는 작업방식의 매뉴얼, 영업시간 등 간접적 지시
- (ii) 가맹점주가 물적 시설 등 외형적 독립사업성+이윤 및 손실위험을 감수 구조

〈대책〉 불공정거래 - 규제 선

Ⅱ.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된 상관관계

3. 무점포 프랜차이즈

- (1) 가맹사업 종사자가 근로자의 지위 못 가짐
- (2) 가맹본부에서 산재를 유발/방치해도, 관계 당사자(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종사자)는 모두 노동법의 적용 범주에 포섭 ×
- → 사업주의 산업안전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無

Ⅲ.프랜차이즈계약 관련 외국의 사례

- 미국과 영국의 선행연구/정책/제도- 법률 규정 無
- 정책 방안: 안전보건예방 가이드, 홍보자료, 실행 가이드 등 예방 조치

1. 미국

-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을 인정 소송 사례 증가
-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하청노동문제와 그 핵심 중 프랜차이즈 대처
- '자율적인 임금근로자'와 '종속적 자영업자'의 포섭 방법 고민
- 근로자 재분류에 기해 '가업사업자'에게도 공정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연장 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 큼
- 특히, 가맹점근로자의 소득보장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책임
 - (i) 가업사업자를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ii) 가업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공동고용'의 실질이 있는 경우

Ⅲ.프랜차이즈계약 관련 외국의 사례

2. 프랑스

- 노동법전에는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명문 규정 無
- 판례: 영업점관리인을 임금금로자로 간주 규정이 프랜차이즈 가업사업자에게도 적용 될 수 있음
- 노동법전은 '영업점관리인'에 대한 단체교섭 및 협약제도의 적용 인정
 - * 영업점관리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 소득을 단체협약에 설정 요구
 - * 단체협약에 없다면, 관할 행정관청이 영업점관리인에게 적용되는 최소한 보수 등 설정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미지급된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및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보상금 지급. 가맹사업근로자는 가맹본부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
- ⁻ 최근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의 특성에 맞는 '단체교섭'/'사회적 대화제도' 입법화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체계

〈표 1〉 노동법제 체계도

		헌법					
		노동	동법				
		개별법	집단법				
노 동	노	근로기준법, 고평법, 산재보험법, 산안법 등	노조법/근참법				
지 제	동 펍	* 사회보험법 (10대 보험) - 4대 사회보장 : 산재보험/고용보험 - 4대 사회보험 : 산재보험·고용보험 -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특수직역 - 2대 의보보험 : 국민건강·장기요양	임금채권·퇴직급여				
	사호	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기타 법제					

Ⅳ.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체계

〈표 2〉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

당사자의 의사	실현	미실현=실업 중
사업(장)에 종속적 근로를 제공	근기법상 근로자	_
=임금으로 생활	Α	C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	В	D
자영업 종사	-	Е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체계

〈표 3〉 근거법상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 종속관계 여부

기본원칙: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종속관계여부를 판단				
	사용자 업무내용 정함 여부			
조소! 도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종 <mark>속노동성</mark>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구속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여부			
독립사업자성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대행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기타 요소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기본급 정함 여부			
신중판단요소 (부차적 요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 여부			

Ⅳ.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체계

〈표 4〉 근기법상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 - 종속성의 정도

분류 원칙	단계	일하는	- 그룹
종속성의 정도	노은 단계 낮은 단계	전속특고 비전속특고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교사 · 레미콘차량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간병인
		전문직종사자	· 연예인 · 프로스포츠선수
		<u> </u>	·유급자원봉사자
		자영인	· 1인 자영인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체계

〈표 5〉취업/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외국법제 근로자 개념의 접근방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노동법의 보호대상		근로자		
실정법상 정의 규정 유무	있음	있음	있음	근로자 : 없음. 유사근로자 : 있음(단체협 약법 제12a조)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통일적 접근+ 개별적 접근	통일적 접근+ 개별적 접근	개별적 접근 (법률별 상이한 접근)	통일적 접근 (모든 노동법에 동일)
근로자성 판단기준	인적 종속성 vs.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다수설)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법마다 상이	인적 종속성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	준근로자개념의 도입 방안 등 입법론상 해결방안 논의중	통설 없음. 종전보다 경제적 종속성 중시 vs. 개별법규의 목적 등 중시	본래 탄력적 기준 (별문제 없음)	인적 종속성 내용 변화 (타인 결정성의 후퇴)

출처: 배동희/김형로/이욱래, 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중앙경제, 2017, 148-149면 참조.

Ⅳ.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1. 근로자의 개념 문제

(2) 산안법상 근로자 개념

- 산안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기법에 따름 **(매우 협소)**
- 노동시장에서 (1)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2)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 (3)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재해석 필요성 모색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1) 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안법 기준과 책임주체

- 산안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한 일터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제1조(목적):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위해(危害)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의 촉진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그 방지에 관 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직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촉진
- 산안법상 근로자 개념
 - * 산재는 사후보상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와 접근 중요
 - * 서비스업 종사자 : 산재예방을 위한 산안법의 재구축 강구

Ⅳ.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2) 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예방과 사후조치의 사각지대

- 최근 서비스업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고용계약, 업무도급/위탁계약 및 원하청계약, 프랜차이즈/체인점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고용관계도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계약에 기초하지 않아 관련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경우 많음
- 그런데, 산안법상 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포함한 재해예방 등의 의무/조치 및 책임주체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한 법 체계와 해석기 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산안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4조, 제26조(작업중지권), 제28조, 제29조 등)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 (3) 근로자성의 인정에 기초한 법적용의 사각지대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조치
- 서비스업 중 재해 발생율이 높은 직종은 배달서비스(음식서비스업 포함), 가사종사자, 판매종사자 등
- 최근 업종별 특징과 그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직종은 플랫폼 노동과 고용관계: 자영적 근로자의 문제, 프랜차이즈/체인점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근로자의 책임 등
-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종사자가 지속 증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의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
- 현행 산안법상 가맹본부의 재해예방 의무 규정 미비
 - * 가맹사업법-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가맹사업자 및 그 직원 교육 등 의무

Ⅳ.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검토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상 쟁점

(4) 다면계약/사용자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책무분배

- ⁻ 최근 다양화된 형태의 고용양상은 하나의 노무제공자가 다수 사용자와 고용/위촉/도 급계약 등 체결
- 다면관계에서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설, 파견/도급 구별 법리, 실질적 지배영향력설 등 활용해 문제 해결
- 다면계약관계 또는 사용사업주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 종사자에 대한 산안의 책임
 소재 문제

V.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1. 법률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

- 노동법 내에서 독자적인 보호방안을 구축해 노동법을 적용 문제보다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호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
- 실제로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상 기업별로 필요한 산업안전의 정도가 다름
- ⁻ 법개정 전까지 변하지 않는 법적 기준으로 법 준수가 실제 산업안전을 저해결과 초래

V.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안전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 필요

(1)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재해 예방

- 사업의 위험을 만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작업 과정에서 등장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예방 책임 분배할 필요
- 사업장 문제, 사업주 인식,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등 산안법상 예방 조치 불충분
- 산안의 인식전환 -**분야별 위험요소, 안전대책, 안전의식의 강화-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 프랜차이즈 사업 종사자의 산재를 예방 '산재예방 지침 및 사업장 체크리스트' 발간해 사업장에 배포, 현장 적용 권고 방안 마련
-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종사자)에서 정부/국회가 산안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
 산안법 체계 구축

V.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안전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 필요

(2) 노동법 적용의 체계 확대 시도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법: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V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의 유사근로자, 취업자 개념과 대비)

 \blacksquare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의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렌차이즈사업 가맹자와 종사자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모든 사업주

V.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안전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 필요

- (3) 구체적인 입법방식
- ① 입법방식의 유형 특례방식 검토 등 : 가맹사업종사자를 대상
- '특수근로형태종사자'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하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백히 구분
- ② 입법 대안(산안법 개정안-신설, 2018.2.19)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기계·원자재·비품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i)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 (ii)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주에게 공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정도

V.프랜차이즈 관련 산안법의 과제

2.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안전보건 예방과 책임의 확대 필요

〈가맹사업 종사자의 규정방식(특례)〉

산안법(개정안)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
 - 2.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정보제공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본 세미나 자료집의 내용은 발표자 및 토론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고사망 감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발 행 일 2018년 7월

발 행 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장호**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전 화 (052) 7030-839

팩 스 (052) 7030-332

홈페이지 oshri.kosha.or.kr